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화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4호로 2013년 11월 19일 김화영 의원외 6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할 진료비 및 지원대상 범위와 연간 지원한도액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부당 수급을 방지하고 원활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반환을 요구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장애인보호법」 제6조 및 제1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진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 관내 동물병원과 진료에 대한 지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고,
 - 안 제5조에 진료비 신청 절차 및 정산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문제점이 없고, 건강한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구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 등록된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등록현황이 없는 실정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반려동물이 실질적인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현황파악이 요구됨.
- 참고로 구 관내 중증장애인은 4,784명이며, 이중 반려동물 보유자는 142명으로 조사되었음.

참 고 자 료

1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 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

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